소규모 합병 공고

㈜한화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화테크엠㈜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– 아 래 –

1. 합병방법 : ㈜한화가 한화테크엠㈜ 분할사업부문 흡수 합병

2. 합병비율 : ㈜한화 : 한화테크엠㈜ = 1:0

3. 합병상대회사의 현황(존속)
   가. 상호 : 한화테크엠㈜
   나. 본점소재지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9(성산동)

4. 합병기일 : 2014년 10월 1일 단, 상법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이나 합병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㈜한화와 한화테크엠㈜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 가. 행사절차 : 2014년 07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 나. 제출기간 : 2014년 07월 19일 ~ 08월 01일(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)
  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  1) 명부주주 : 2014년 8월 1일까지 ㈜한화 지원팀에 제출(우편 또는 팩스)
         – 주소 :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길(장교동, 한화빌딩) 지원팀 담당자앞
         (FAX : 02-752-3479, TEL : 02-729-1546)
      2) 실질주주 : 2014년 7월 29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 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 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본인은 ㈜한화와 한화테크엠㈜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4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(주)한화 대표이사 귀하

2014년 7월 18일

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 심 경 섭